

## 정책연구 용역과제 평가 회의록

1. 과 제 명: 해외사업자에 대한 저작권법상 행정조치 연구(부제: CDN사업자를 중심으로)
2. 일 시: 2024년 12월 18일 (수요일), 9:30~12:00
3. 장 소: 한국저작권보호원 10층 회의실
4. 참석위원: 총 5인
5. 회의내용 및 결과 : '합격'
  - 저작권법 제103조의 2에 시정명령 등 대상에 해외 OSP를 적용할 수 있는 모색적 금지명령 관련 조문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.
  - 결과발생지 개념을 고려하면, 외국 서비스가 국내를 지향하고 국내 이용자가 불법 복제물 등을 쉽게 다운로드를 할 수 있어 국내에서 저작권 침해 결과가 발생한다고 인정되는 사안의 경우 객관적 속지주의 이론에 따라 국내 저작권법에 기하여 외국 OSP에 대해 시정권고 등이 가능하다고 판단됨.
  - 해당 불법복제물 사이트 운영자를 국내 OSP로 보고, 또는 저작권 침해지도 국내로 불 경우 시정권고 성격의 경고 이메일의 활용이 가능하나, 외국의 실무 관행, 국제예약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내용, 표현 등을 국내적 조치와 다르게 할 필요가 있음.
  - 국내법의 개선뿐만 아니라, 국제적 협력과 새로운 기술의 활용이 필요하며, 해외 OSP에 대한 실효적 행정조치(제3의 행정조치-이메일 및 저작권자와 공동으로 경고장 발송)와 법적 책임 강화를 위한 역외적용 제도, 국제 협력 강화, CDN 사업자의 책임성 확보, 새로운 금지명령 제도의 도입 등을 적극 검토 필요함.
  - 보호원의 조치 가능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것을 제안함

정책연구 용역과제 평가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24. 12. 18.